

|           |                    |      |
|-----------|--------------------|------|
| 의안번호      | 제 호                | 의결사항 |
| 의결<br>연월일 | 2021. . .<br>(제 회) |      |

국 민 건 강 보 험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        |                       |
|--------|-----------------------|
| 제 출 자  | 국무위원 권덕철<br>(보건복지부장관) |
| 제출 연월일 | 2021. .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 1. 의결주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나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 또는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772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나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 또는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준요양기관 또는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와의 관련 여부, 징수금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임신·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 및 이용권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 상한액을 늘리며, 요양병원을 정신병원과 분리하여 규정한 「의료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4. 8. ~ 5.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호 중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을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정신병원”으로, “정신과 폐쇄병실”을 “정신과 입원실”로 한다.

제20조제5호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라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요양병원”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1호 중 “요양병원”을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을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

지의 규정에 따른 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7조의2제1항”을 “법 제47조의2제1항 전단”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47조의2제1항”을 “법 제47조의2제1항 전단”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중 “1세”를 각각 “2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처방된 약제·치료재료”를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약제·치료재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1세”를 각각 “2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1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세”를 각각 “2세”로, “1년”을 “2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6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만원”을 “140만원”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전단 중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4.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법 제49조제1

항에 따른 준요양기관(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51조 제2항에 따른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이하 “보조기기 판매업자”라 한다)

제81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준요양기관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요양비 지급 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 보조기기 판매업자는 법 제51조제2항 전단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별표 2 제1호가목1) 단서 중 “정신과 폐쇄병실”을 각각 “정신과 입원실”로,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을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정신병원”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요양병원”을 “요양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표의 기관 종류란 중 “요양병원”을 “요양병원, 정신병원”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을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정신병원”으로, “정신과 폐쇄병실”을 “정신과 입원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1)·같은 호 라목2) 표의 기관 종류란·같은 호 파목 표의 기관 종류란 중 “요양병원”을 각각 “요양병원, 정신병원”으로 하며, 같은 호 너목 중 “라목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표 외의 부분 본문 중 “요양병원”을 “요양병원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정신병원”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제외한다)”을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4의3 제2호가목 중 “법 제96조의2”를 “법 제96조의3”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제2호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96조의2”를 “법 제96조의3”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출산 진료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여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6]

포상금의 지급 기준(제75조제4항 관련)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 징수금             | 포상금                                                               |
|-----------------|-------------------------------------------------------------------|
| 1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징수금 × 20/100                                                      |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2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 15/100]                                   |
| 2천만원 초과         | 350만원 + [(징수금 - 2천만원) × 10/100]<br>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준요양기관·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경우

가. 준요양기관·보조기기 판매업자 관련자

- 1) 준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사람이 그 준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 2) 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사람이 그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경우

| 징수금             | 포상금                                                               |
|-----------------|-------------------------------------------------------------------|
| 1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징수금 × 30/100                                                      |
|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3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 20/100]                                   |
| 5천만원 초과         | 1,100만원 + [(징수금 - 5천만원) × 10/100]<br>다만, 2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20억원으로 한다. |

나. 준요양기관·보조기기 판매업소 이용자

- 1) 준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사람,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요양과 관련된 보험급여에 대하여 준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 2) 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조기기를 구매한 사람,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보조기기의 구매와 관련된 보험급여에 대하여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경우

| 징수금             | 포상금          |
|-----------------|--------------|
| 2천원 이상 2만5천원 이하 | 1만원          |
| 2만5천원 초과        | 징수금 × 40/100 |

|  |                                |
|--|--------------------------------|
|  |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

다. 그 밖의 신고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준요양기관·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경우

| 징수금             | 포상금                                                               |
|-----------------|-------------------------------------------------------------------|
| 1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징수금 × 20/100                                                      |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2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 15/100]                                   |
| 2천만원 초과         | 350만원 + [(징수금 - 2천만원) × 10/100]<br>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준요양기관·보조기기 판매업자는 제외한다)를 신고한 경우

| 징수금             | 포상금                                                               |
|-----------------|-------------------------------------------------------------------|
| 1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징수금 × 20/100                                                      |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2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 15/100]                                   |
| 2천만원 초과         | 350만원 + [(징수금 - 2천만원) × 10/100]<br>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4.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또는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경우

가. 요양기관·준요양기관·보조기기 판매업자 관련자

- 1) 요양기관·준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및 그 밖의 직원 등이 그 요양기관·준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 2)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사람이 요양기관·준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 3) 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사람이 그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경우

| 징수금             | 포상금                                                               |
|-----------------|-------------------------------------------------------------------|
| 1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징수금 × 30/100                                                      |
|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3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 20/100]                                   |
| 5천만원 초과         | 1,100만원 + [(징수금 - 5천만원) × 10/100]<br>다만, 2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20억원으로 한다. |

나. 요양기관·준요양기관·보조기기 판매업소 이용자

- 1)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진료와 관련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 2) 준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사람,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요양과 관련된 보험급여에 대하여 준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 3) 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조기기를 구매한 사람,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보조기기의 구매와 관련된 보험급여에 대하여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경우

| 징수금             | 포상금                                            |
|-----------------|------------------------------------------------|
| 2천원 이상 2만5천원 이하 | 1만원                                            |
| 2만5천원 초과        | 징수금 × 40/100<br>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다. 그 밖의 신고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요양기관·준요양기관·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경우

| 징수금             | 포상금                                                               |
|-----------------|-------------------------------------------------------------------|
| 1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징수금 × 20/100                                                      |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2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 15/100]                                   |
| 2천만원 초과         | 350만원 + [(징수금 - 2천만원) × 10/100]<br>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 비고

1. “징수금”이란 공단이 신고인의 신고 사실과 관련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또는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에 대하여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2.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로 부담한 금액

2. ~ 5. (생략)

④ ~ ⑥ (생략)

제20조(요양급여비용계약의 당사자)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당사자인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가목·라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단체의 장

6.·7. (생략)

제21조(계약의 내용 등) ①·②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

-----

2. ~ 5.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요양급여비용계약의 당사자) -----

-----  
-----  
-----.

1. ~ 4. (현행과 같음)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가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

6.·7. (현행과 같음)

제21조(계약의 내용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  
----- 요양병원(「장애인 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

목의 점수와 약제·치료재료의 비용을 합산하여 증세의 경중도(輕重度)의 구분에 따른 1일당 상대가치점수로 산정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같은 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 종합병원 또는 「지역보건법」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진단명, 시술명, 중증도(重症度), 나이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 환자집단을 말한다]에 대하여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와 약제·치료재료의 비용을 포괄하여 입원 건당 하나의 상대가치점수로 산정

3. (생략)

④ (생략)

제22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2. -----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등) ① 공단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에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 ④ (생략)

⑤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결정을 받은 요양기관은 무죄 판결이나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해야 한다.

⑥·⑦ (생략)

제23조(부가급여)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1세 미만 영유아”라 한다)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보류 등) ① ----- 법 제47조의2제1항 전단-----

-----  
-----  
----- 통지해야 ----.

1. ~ 3.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47조의2제1항 전단---  
-----  
-----  
-----  
-----.

⑥·⑦ (현행과 같음)

제23조(부가급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2세 -----  
-----2세 -----  
-----  
-----

③ 공단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1.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에 드는 비용

2.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3.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에 드는 비용

4. 1세 미만 영유아에게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④·⑤ (생략)

⑥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제5항에 따라 이용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로 한다.

1.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출산일(유산 및 사산의 경우 그 해당일)부터 1년이 되는 날

③ -----  
-----  
-----  
-----  
-----  
-----.

1.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  
-----

2.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약제·치료재료-----

3. 2세 -----  
-----

4. 2세 -----  
-----  
-----

④·⑤ (현행과 같음)

⑥ -----  
-----  
-----  
-----.

1. -----  
-----  
----- 2년  
-----

2.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1세 미만 영유아의 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

⑦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상한을 초과하여 결제할 수 있다.

1.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60만원

2.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원

⑧ (생략)

제75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할 때에는 대표자를 지정해야 한다.

<신설>

2. 2세 -----  
--- 2세 -----  
---- 2년-----

⑦ -----  
-----  
-----.  
-----  
-----  
-----  
-----  
-----  
-----.

1. -----  
--- 100만원

2. -----  
----- 140만원

⑧ (현행과 같음)

제75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  
-----  
-----  
-----.  
-----  
-----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

<신 설>

<신 설>

<신 설>

② ~ ⑥ (생략)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③ (생략)

<신 설>

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4.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준요양기관(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이하 “보조기기 판매업자”라 한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준요양기관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요양비 지급 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

<신 설>

④ (생 략)

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 보조기기 판매업자는 법 제51조제2항 전단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
| 연 락 처       | (044) 202 - 2731 |